

등록번호	사회복지과-10458
등록일자	2016.3.31.
결재일자	2016.3.31.
공개구분	대시민공개

주무관	통합관리팀장	사회복지과장	복지문화국장	
금문정	엄기순	代정세영	03/31 오제성	
협 조	여성정책팀장 어르신일자리팀장 장애인복지팀장 생활보장팀장	나승임 조철호 김찬종 정세영		

2016년 상반기 복지대상자

확인조사 실시 계획



**서대문구
사회복지과**

2016년 상반기 복지대상자

확인조사 실시 계획

국민기초생활보장, 기초연금, 차상위 장애인·자활·본인부담경감, 한부모가족지원사업,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,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된 소득·재산 공적자료를 반영하여 급여의 적정성 확보

I 추진근거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(확인조사)
-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-2216(2016.2.26)호
‘제12회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실시’

II 추진방향

- 국세청, 건강보험공단등에서 제공받은 65종의 소득·재산관련 공적자료와 134개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금융재산을 반영하여 복지수급자 급여의 적정성 확보
- 보장중지 또는 급여감소 대상자에 대한 권리구제 및 연계보호 적극 검토
- 부정수급자 보장비용징수

Ⅲ || 추진개요

■ 추진기간 : 2016. 3. 2.~2016. 5. 31.(3개월)

■ 조사대상 현황

(단위 : 가구)

합 계	국민 기초	기초 연금	한부모	차상위 장애인	차상위 자 활	차상위 본인부담	차상위 계층 확인서	타법 의료급여
3,609	2,198	888	126	66	21	154	74	82

- 대상별 세부내용 :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, 기초연금, 한부모가족, 차상위장애인·자활·본인부담경감,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, 타법 의료급여(국가유공자,북한이탈주민,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) 수급자

■ 조사내용

- 복지급여 대상자의 건강보험 보수월액, 재산세 관련 정보, 금융재산 등 소득·재산 공적자료 적용
- 직권등록된 자료와 신규 조회된 공적자료 중복 제거 및 일용근로 소득 사전확인 후 적용
-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최초 확인조사 : 소득·재산 공적자료 적용하여 선정기준 조정 현실화

IV | 세부추진 계획

■ 추진일정

- 공적자료 전산정비 실시 : 2016.2.1.~3.2
- 자료정비를 위한 시스템 중단 : 2016.2.26. 18:00~3.2. 08:00
- 급여·자격변경자 처분 서면통지 : 2016.3.2.~5.31.
- 초중고 교육비지원사업 집중 신청기간 : 2016.3.2.~3.18.
- 급여관련 확인·반영 : 2016.3.12.~3.14.
- 이의신청 : 2016.3.2.~5.31.
- 이의신청 접수 및 소명자료 반영 : 2016.3.2~5.31.

■ 확인조사 내용별 추진부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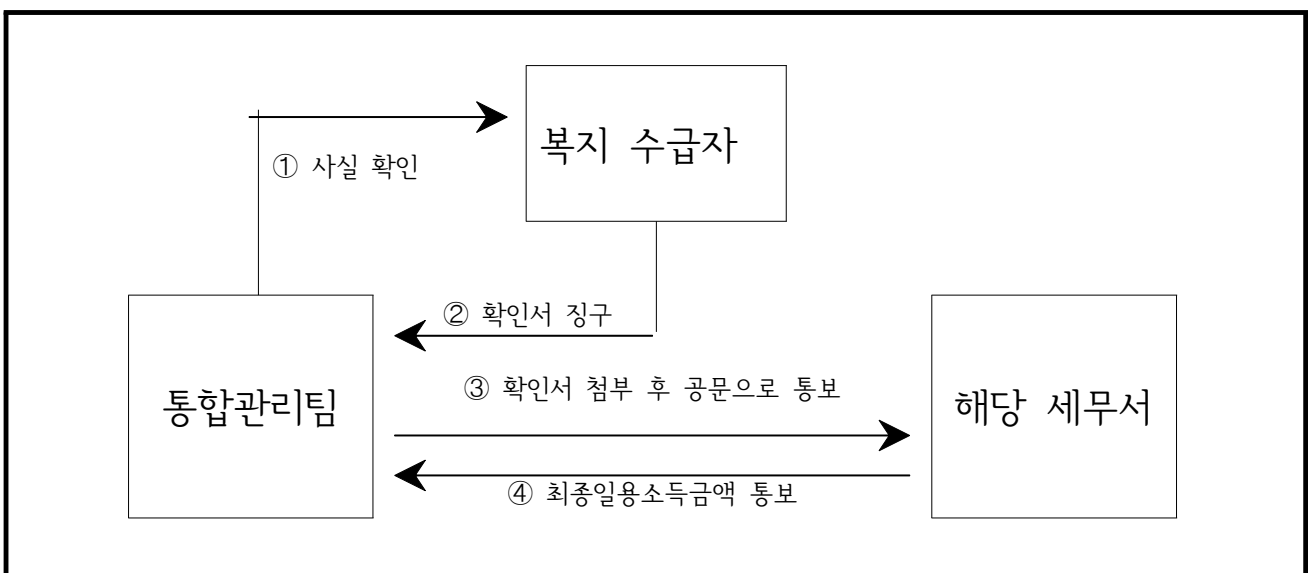
부 서	추진 내용
통합관리팀 (사회복지과)	소득·재산 반영 및 조사자 결정 처리
사업부서	보장중지 처리, 급여변경자 상계처리, 급여환수, 보장비용징수 등
동주민센터	급여변동 안내, 소명에 필요한 확인서 징구등 대민접촉 업무

■ 확인조사방법

- 국세청, 건강보험공단등에서 제공받은 65종의 소득·재산 관련 공적 자료와 134개 금융기관에서 제공받은 금융재산을 모두 반영을 원칙으로 하되 소명자료 등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확인 후 반영
- 과거 직권·소명으로 등록된 자료는 모두 반영하고 변동사항 여부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사실확인 후 반영
- 소득·재산 등의 과거 직권 등록된 자료와 신규 조회된 공적자료에 대해서는 공적자료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일사항의 중복 반영 자료에 대해서는 중복자료 삭제

■ 일용근로소득 조사 및 처리방법

※ 일용근로소득 확인절차 흐름도



- ① 수급자에게 사실 확인에 대한 소명 요청
- ② 사실확인서를 징구받아 스캔 후,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
- ③ 소명 받은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해당 세무서에 사실여부 확인요청

·유형1 : 근로를 하였으나 통보금액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

(사업주로부터 받은 증빙서류 첨부)

·유형2 : 근로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하거나, 사업주가 확인서 발급을 거부 또는 폐업

·유형3 : 현재 일용근로를 안한다고 주장 (현재 별도의 소득활동을 하면 소득 신고서 첨부)

※ 유형1,2 세무서에 공문으로 요청시 서식

근로자 정보		사업장 정보		일용소득				관할세무서
성명	주민번호	사업장명	사업자번호	근로기간	통보금액	소명금액	확정금액	

- ④ 수신된 공문을 근거로 소득금액 반영 처리

■ 소명기간 운영 및 민원안내

● 이의신청 및 소명자료 반영 : 2016.3.2~5.31(3개월)

- 자격변경자에게 확인조사 기간 동안은 현금 급여는 중지하되, 의료 급여 등 현물급여는 지속 지급(5월까지)

- 급여변경자는 3월에 즉시 급여내용을 변경 반영하되, 이의신청 기간 동안 소명 확인되는 경우 3월 급여부터 소급지급 가능

● 소명기회 부여 및 이의신청제도 안내로 권리구제 방안 모색

● 급여감소, 보장중지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세대에 대해 타복지 급여 (서울형 생활보장등), 민간서비스 연계, 사례관리등 적극적 보호 강구

V | 행정사항

■ 동 주민센터

- 복지변동대상자의 소명자료 징구 후 사회복지과로 보고
- 급여변동 민원 안내 철저

■ 사업팀(사회복지과 생활보장팀, 장애인복지팀, 여성정책팀)

- 급여변경반영(2016.3월), 소명기간 이후 보장중지(2016.5월)
-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환수처리

- 붙임 1. 일용근로 사실확인서 1부.
2. 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사전 안내문 1부. 끝.

붙임 2 사전 안내문

복지대상자 자격변동 사전 안내문

대상자 (가구주)	성명	
	주소	
현재 지원받고 있는 보장	<input type="checkbox"/> 기초생활보장 <input type="checkbox"/> 영유아보육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아학비 <input type="checkbox"/> 청소년특별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한부모가족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연금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초연금 <input type="checkbox"/>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<input type="checkbox"/> 차상위장애 <input type="checkbox"/> 차상위자활 <input type="checkbox"/> 초중고학생교육비 지원 <input type="checkbox"/> 타법의료급여	
예상변동내역	<input type="checkbox"/> 급여증가 <input type="checkbox"/> 급여감소 <input type="checkbox"/> 자격중지	
<p>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복지 수급 자격이 있는 대상자가 적정한 급여를 받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수급자 및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소득·재산 확인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.</p> <p>이에 2016년도 상반기 확인조사를 진행함에 있어 귀하의 가구에 대한 조사 결과 상기와 같이 (<input type="checkbox"/>급여증가 <input type="checkbox"/> 급여감소 <input type="checkbox"/> 자격중지) 예상되어 사전 안내문을 보내드리니 귀하께서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를 하셔서 조사결과에 대한 소명을 해주시기 바라며, 소명기간 안에 별도 연락이 없을 경우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.</p> <p>- 소명기간 : 2016년 월 일 까지</p> <p>- 소명방법 : 소명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서면제출</p> <p>- 문 의 처 : 0 0 0 ☎ 02-330-0000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6. .</p> <h2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 대 문 구 청 장</h2>		
유의사항	<p>○ 소명기간 동안 위의 내용에 대한 소명이 없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액이 변동되어 적용됨</p> <p>○ (이의신청 안내) 시군구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·재산, 부양의무자와의 가족관계 변동사항에 대한 소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신청이 가능함</p> <p>○ (생활여건 변경시 재신청 가능) 생활수준이 현재보다 어려워져 자격기준에 다시 부합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재신청이 가능함</p>	